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근로기준법§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2. 11. 30.(수)

'상시근로자 수' 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23년 최저임금(9,6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2,010,580원

'상시근로자 수' 등 우대

○ **'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3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2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7.1.1.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본점 기준)

○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는 별도 적용)

* 조특법 §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계산방법 예시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12} = \textbf{51.2명}$$

• **수도권 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5.9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5 + 25 + 25 + 25 + 25 + 27 + 27 + 27 + 27 + 26 + 26 + 26}{12} = \textbf{25.9명}$$

○ 2023년(계획)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3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외 1명)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3.7월 상시근로자 1명 퇴사(수도권 1명)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	52	52	52	53	53	52	52	53	53	53	53
수도권 외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2.5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2 + 52 + 52 + 52 + 53 + 53 + 52 + 52 + 53 + 53 + 53 + 53}{12} = \textbf{52.5명}$$

• **수도권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6.8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6 + 26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12} = \textbf{26.8명}$$

❑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청년 등 근로자 수 : 20.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12} = 20.7명$$

○ 2023년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3.9월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청년 등 근로자 수 : 22.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12} = 22.0명$$

❑ 증가비율

구분	상시근로자			청년등 근로자	증가비율	
	소계	수도권	수도권외		일반 {③+㉡+(㉠×0.5)}/①	청년창업등 {③×2+(㉠×0.5)}/①
2022년	77.1(①)	51.2	25.9	20.7	5.1%	6.2%
2023년	79.3(②)	52.5	26.8	22.0		
증가인원	2.2(③)	1.3(㉠)	0.9(㉡)	1.3(㉢)		

○ 일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비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79.3명-77.1명)+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22.0명-20.7명)+수도권외 증가인원((26.8-25.9)×0.5)} ÷ 22년 상시근로자수(77.1명)

○ 청년창업·강소기업 일자리 창출비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79.3명-77.1명)×2+수도권외 증가인원((26.8-25.9)×0.5)} ÷ 22년 상시근로자수(77.1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계산방법 예시 (개인사업자(주사업장 '수도권' 소재))

❑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12} = 51.2명$$

• **2022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12} = 20.7명$$

❑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3.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12} = 53.0명$$

• **2023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2.0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12} = 22.0명$$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3.1명 / 51.2명) × 100 = 6.0%**

○ 3.1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53.0 - 51.2 = 1.8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22.0-20.7)* × 1 = 1.3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3.6명 / 51.2명) × 100 = 7.0%**

○ 3.6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53.0 - 51.2) = 1.8명] × 2

계산방법 예시 (개인사업자(주사업장 '수도권외' 소재))

❑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12} = \textbf{51.2명}$$

• **2022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0 + 20 + 20 +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12} = \textbf{20.7명}$$

❑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3.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12} = \textbf{53.0명}$$

• **2023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2.0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12} = \textbf{22.0명}$$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4.0명 / 51.2명) × 100 = 7.8%**

○ 4.0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53.0 - 51.2 = 1.8명)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가중치 [1.8명 × 0.5 = 0.9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22.0-20.7)* × 1 = 1.3명]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가중치,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 **증가비율 : (4.5명 / 51.2명) × 100 = 8.7%**

○ 4.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53.0 - 51.2) = 1.8명] × 2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가중치 [1.8명 × 0.5]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2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3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②·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5.12% ⇢ 5.1%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2.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12} = 67.5명$$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2023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frac{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12} = 70명$$

*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2.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22.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12} = 67.5명$$

○ 2023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frac{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12} = 70명$$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